

#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
----------	-----

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균정을 구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1조제7호 및 제10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인용조문 수정
- 조례안 제2조제2호(삭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한 내용과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미 법에서 정의한 사항을 중복적으로 정의할 필요도 없으므로 삭제
- 조례안 제2조제5호 및 제7호
  - 제5호 : 상점가의 정의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내용과 불일치한 사항을 수정
  - 제7호 : 편의시설의 정의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한 내용과 불일치한 사항을 수정

○ 조례안 제3조제1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2. 12. 11. 개정되면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삭제하였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서도 시장의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

○ 조례안 제6조 ~ 제10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정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명칭 등을 변경

○ 조례안 제13조 및 제15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2. 12. 11. 개정되면서 임시시장은 등록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등록 취소 규정은 삭제

○ 조례안 제20조 및 제24조

-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및 상인회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4항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65조제8항에서는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및 상인회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삭제

○ 조례안 제35조 ~ 제39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09. 10. 7. 개정되어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조례로 위임하던 것을, 이 영 별표

에서 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에서 과태료 관련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조례의 과태료 규정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삭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5. 09. 23. ~ 2015. 10. 13.)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내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7. “공동시설”이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편의시설”이란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시설물과 공동시설 등의 관리)”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시설물,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이하 “공동시설 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편의시설의”를 각각 “공동시설 등의”로, “편의시설을”을 “공동시설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편의시설의”를 “공동시설 등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공동시설 등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편의시설의”를 “공동시설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편의시설을”을 “공동시설 등을”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인정시장의 기준 등)”을“(전통시장의 기준 등)”으로 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제6조제1항제2호 중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을 “상가

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로 한다.

제7조의 제목“(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을“(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인정시장구역”을 “전통시장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으로, “편의시설을”을 “공동시설 등을”로, “인정시장구역”을 “전통시장구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를“(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로 하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및 편의시설”을 “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를“(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로 하고,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인정시장의 인정취소)”를“(전통시장의 인정취소)”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을“(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등록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를 “시장관리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의”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5조 앞의 “제5장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삭제한다.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생 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평창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 6. (생 략)</p> <p>7.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사용료 등 감면율에 관한 사항</p> <p>8.·9. (생 략)</p> <p>10.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p> <p>11. (생 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현행과 같음)</p> <p>제1조(목적) ----- ----- ----- ----- -----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제7조제2호 ----- ----- -----</p> <p>8.·9. (현행과 같음)</p> <p>10. ----제35조 ----- ----- -----</p> <p>11.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 ----- -----.</p>

1. (생략)

2. "상권활성화구역"이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4. (생략)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내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6. (생략)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내에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 센터, 콜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삭제>

3. 4. (현행과 같음)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내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7. "공동시설"이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을 말한다.

다.

<신 설>

8. (생 략)

9. (생 략)

제3조(시장의 관리) ① 시장은 도  
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  
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  
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등록시장으로,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인정시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  
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  
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8. "편의시설"이란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  
실, 고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9. (현행 제8호와 같음)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3조(시장의 관리) ① 군수는 시  
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  
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  
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조(시설물과 공동시설 등의 관

리) ① -----  
-----시설물, 공동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및 편의시설(이하 "공동시설 등"이라 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시설 등의 -----

-----

-----

-----공동시설 등의 -----

-----

-----

-----

-----

-----공동시설 등을 -----

-----.

-----

-----

-----

-----

-----

-----.

④ -----

-----공동시설 등의 -----

-----

-----

-----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경우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공동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공동시설 등의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공동시설 등을 -----  
-----  
-----.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 -----  
-----  
-----  
-----  
-----.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제1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

-----

-----

-----시장관리자로 지정받

으려는 자의 -----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삭 제>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영 제2 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5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35조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제36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삭 제>

<삭 제>

<삭 제>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

<삭 제>

<삭 제>

<삭 제>

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는 「평창군세부과징수규칙」  
을 따른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 성 자	경제체육과장 한 왕 기
연 락 처	(033)330-2540

# 관계 법령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의2 생략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 13. 생략

##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5조 (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